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 266회 임시회

2020년도 「(재)달서문화재단」 출연 계획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2019. 11.

복지문화 위원회  
전문위원

# 2020년도 「(재)달서문화재단」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2019. 11. 5.
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 : 2020년도 「(재)달서문화재단」 출연 계획안
-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(문화체육관광과)
- 제출일자 : 2019. 11. 1.
- 회부일자 : 2019. 11. 1.
- 검토기간 : 2019. 11. 1. ~ 2019. 11. 4.

## 2. 제안이유

- 2020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『(재)달서문화재단』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(재)달서문화재단 출연: 974,632,000원
  -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물론,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적 기관 필요
  - 이에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문화예술 전 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4. 4월 달서문화재단 설립·운영
  - 2020년도에는 달서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적립을 위한 300,000천원과 운영을 위한 674,632천원을 포함한 974,632천원을 출연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생활 속 문화일상화 추진에 기여

## 4. 관련근거

- 『지방재정법』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『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20조
- 『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5조 및 제11조

## 5. 검토의견

- 현행 『지방재정법』에 따르면,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도록(제18조제3항)” 규정.
  - 출자·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, 지원 절차를 보다 강화하여 선심성·낭비성 있는 출자·출연이 없도록, 출자·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함이 『지방재정법』의 취지.
- 금번 제출된 「(재)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(이하 “계획안”이라 함)은 현행 『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에 따라 구가 기 출연한 (재)달서문화재단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, 상기 『지방재정법』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.
-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### 2020회계연도 출연금 계획 규모

○ **출연 예정금액 : 974,632천원**

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 사항 (단위:백만원)

구 분	사업기간	2019년 예산액	2020년 요구액	재원별				
				계	국비	시비	구비	기타
달서구 출연금	2020.1.~1 2월	948	974	1,042			974	68

- 기본재산: 300,000천원(2019년 현재 기본재산 2,450,000천원)

- 운영비: 674,632천원(신규사업 기획 등 운영비 추가 시 추경편성 예정)

○ 달서구 자체 예산으로 설립된 동 재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구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점에 비쳐볼 때, 재단에 대한 2020회계연도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○ 다만,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계획안에 담긴 동 재단의 내년도 사업 내용과 이에 따른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및 재단에 대한 외부 경영 실적평가 및 결산 감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있음.

□ **출연금 세부 사업 내역 : 974,632천원**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18년도결산액	2019년도 예산액 (A)	2020년도 출연계획 규모 (B)	증감 (B-A)
총 계	886	948	974	26
기관운영비	347	397	440	43
인건비	295	314	371	57
경상비	52	83	69	△14
사업비	539	551	534	△17
적립금	300	300	300	-
문화기획홍보	32	37	35	△2
문화예술기획	207	214	199	△15

□ **연도별 출연 내역**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합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
출연금	5,191	950	765	778	864	886	948

○ 한편, 오는 12월, '2020회계연도 예산(안)'에 대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재단에 대한 2020년도 출연금 규모를 최종 확정 · 의결하게 됨.

## 【관련 법규】

### □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- 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제28조(경영실적의 평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9조(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1.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
  2. 제19조에 따른 결산서의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

### □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기본재산)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
3. 사업수익금
4. 자체 수입금

제11조(운영재원 등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9조(재정지원)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